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50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 중소기업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확인서 우선 발급 도입 추진

2. 주요내용

가.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우선 발급 내용 신설(제6조)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8조)

다.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작성시 재해 중소기업 여부 확인 내용 추가
(별지 제1호)

3. 의견제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11일 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1) 전자우편(이메일) : pjh88@korea.kr
-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우편번호 30121)
- 3) 팩스 : 044-204-767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주요정책 -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전화 044-204-7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